

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을 중심으로

Recogni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related Multiple Sclerosis and Its Implications

전병주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Byeong-Joo Jeon(okbj@hanmail.net)

요약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재해율과 달리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다발성 경화증)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다발성 경화증 | 업무상 질병 | 증명책임 |

Abstract

Despite the government operating various preventive programs to ward off accidents and diseases on business sites, diseases rates are not decreasing, unlike accident rates. In many cases, diseases caused by work have a latent period before symptoms appear or progress over a longer term, making it difficult for workers to prove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ir work and the diseases. Moreover, data related to the business site are mostly owned by the employer. Even if the employee has access to parts of such data, his lack of medical expertise limits his ability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eases and how it appears. In August, 2017 the Supreme Court did an about-face with its ruling on the case involving diseases caused by exposure to harmful substances in work environments, by eas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employees. As such,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to analyze cases involving diseases that have occurred in work environments and present their implications. In doing so, the study seeks to provide a basic set of data that can help secure the employees' labor rights and rights to health by complementing the current law in relation to recognizing industrial incidents caused by rare diseases and making work environments safer for employees.

■ keyword : | Multiple Sclerosis | Occupational Diseases | Burden of Proof |

I. 서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업재해 지표가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전체 재해율은 0.49%로 조사되었고 사망만인율은 0.96‰로 나타나 산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처음으로 재해율은 0.4%대 그리고 사망만인율은 0.9‰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1].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등의 안전사고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어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²⁾. 더욱이 산업재해 현황에서 전체 재해율과 함께 사고 재해율은 감소했으나, 질병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

산업재해 중 업무상 사고는 인과관계의 판단이 비교적 용이하여 산업현장에서 직면하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2].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고 발병되거나,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현장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있으며, 자료의 일부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질병의 특성 및 발현과정 등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한다[3].

이와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반도체 생산과 같은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은 이러한 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3].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단체인 '반올림'에 의하면³⁾, 1년에 10만건의 산재 신청 중에서 근로복지공

단에 의한 승인률은 93%에 이르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그 승인률이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4].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여러 사례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대법원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업무와 질병(뇌경색)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아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근로자의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5. 11. 13. 선고 2013누13862 판결). 그리고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출장에서 방대한 업무량과 기한 내 업무를 끝내야 하는 압박감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와 질병(모야모야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원고(근로자) 승소판결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단 53619 판결).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5]. 헌법재판소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거나, 이 제도를 형해화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하지만,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증명이 필요한 증거는 주로 사용자측(기업)이 가지고 있으며, 증명 과정에서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증명책임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6][7]. 더욱이 반도체 생산과 같은 첨단 전자산업은 그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기술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각 공정마다 사용되는 화학물질과 설비 등이 매우 다양하다. 기업에서도 제품이나 설비에 최적화된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작업자에게 유해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6].

1)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하고,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3) 반올림은 2007년 A전자회사에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계기로 산업의학 전문의, 변호사, 노무사,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전자분야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회복을 위해 산재 신청 및 소송 지원, 산재 연구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8월 대법원은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한 전향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 3867 판결).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온 A전자의 반도체 또는 LCD 생산현장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 중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A전자에 근무하던 B씨에게 발생한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이라는 희귀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직업병 산업재해 사건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이다⁴⁾.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섬유가 서서히 파괴되어 근육과 장기가 마비되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질병의 유병률은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 더욱이 질병의 이행과정 및 장애정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 환자와 가족들은 많은 고통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 경험은 '살얼음판 위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고독한 싸움', '바람 앞 촛불이 되어버린 관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꺼져가는 희망'이라고 분석하였다^[9]. 하지만, 현재까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과도한 스트레스와 유기용제(다른 물질을 녹이는 액체)의 취급, 자외선 노출 부족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10].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와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는 각종 예방대책을 운영하고, 사법부도 관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인권과 노동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근로자의 요양급여를 판정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적 조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더욱 어렵게 하며,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상 질병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와 가족의 고통을 고려할 때 많은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법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 대한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건강권과 노동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대상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근로자 B씨(여, 34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2년 11월에 A전자에 입사해 충남에 위치한 액정디스플레이(LCD) 공장에서 모듈공정 중 LCD 패널의 화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B씨는 15~19인치 패널 화면의 색상과 패턴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불량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하루 9~12시간 이소프로필알코올 등의 화학물질과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모듈 공정 전체가 하나의 개방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작업장 내 어느 하나의 세부공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별도로 여과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작업장 내에 계속 머무르는 구조였다. 더욱이 근로자 B씨는 4조 3교대(1일 8시간 근무) 또는 3조 2교대(1일 12시간 근무) 근무가 원칙이었지만, 상시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

근로자 B씨는 당해 사업장에서 약 1년 정도 근무한 시점인 2003년 10월부터 오른쪽 눈의 시각과 팔다리 신경기능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4)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 내에 탈수초성 병변이 척수, 시신경, 대뇌반구, 소뇌 및 뇌간 등에 시간과 공간 상 파종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는 신경 증상의 악화와 관해를 반복한다. 주요 증상으로 척수로의 장애, 감각 이상, 운동 실조, 시신경 장애, 복시, 현훈,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이 있다^[11].

받기 시작하였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B씨는 아토피성 결막염과 팔다리 신경기능 이상 등이 나타났고, 원인 불명의 가슴 통증과 관절증도 앓게 되었다. 그러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2007년 2월 퇴사하였다.

근로자 B씨는 2007년 3월 지역 의료기관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기도 하였으나, 2008년 9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후 B씨는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한쪽 눈을 실명하였고 거동도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조금만 피곤해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에 B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2010년 7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2011년 2월 공단은 B씨에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B씨는 201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누7123 판결)에서는 “근로자 B씨가 업무로 인하여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B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업무스트레스도 상당했을 수 있지만, 다발성 경화증 발병으로 이어질 정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항소심에서는 근로자 B씨에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B씨가 상고하였다.

3. 대법원 판결

2017년 8월, 대법원은 “특정 산업 종사자 군 또는 특정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내지 관련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A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

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 B씨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B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근로자 B씨는 입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었는데, LCD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해당 질병의 평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으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과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III. 대상 판결에 대한 논의

이 사건에서 하급심은 근로자 B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근로자) 패소판결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1.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는 외인성(外因性)에 의해 발생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일종의 내인성(內因性)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양자는 업무 관련성에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2][5].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업무기인성이 충분히 추정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판

단해야 할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하여 이 요건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통적 견해이었다[2]. 하지만, 현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삭제하고 업무상 사유라는 포괄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보다 탄력적인 해석이 요구될 될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5. 11. 13. 선고 2013누13862 판결).

이 사건은 C공사에서 총무·재무·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했던 근로자가 빈번한 출장 등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업무를 스스로 조절하여 수행할 수 있었고, 정확한 출퇴근 시간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당뇨·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근로자가 가지고 있었고, 근로자가 음식조절과 체중조절 등의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뇌경색)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아도 가족과 떨어져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외 출장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해당 근로자에게 질병을 유발할 기저질환이 확인되었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 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라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단53619 판결).

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선천적으로 질병을 갖고 있었으며, 업무와 모야모야병 발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근로자가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인지되었으나, 법원 감정의(鑑定醫)에 따르면 모야모야병은 일부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발병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으며 모야모야병 환자에게 혈압 상승을 초래하는 큰 스트레스는 뇌출혈 발생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와 부담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이상, 모야모야병이 발현했거나 내재해 있던 모야모야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출혈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근로현장에서의 질병 발생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산업재해 판정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유지하던 사법부가 최근에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였다. 즉, 근로자의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회귀질환이더라도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허용기준 이하의 저농도라고 할지라도 상시 또는 누적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회귀질환이 발병하면 보다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근로자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요인으로

거론되는 유기용제 노출, 주·야간 교대근무, 햇빛 노출 부족,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근로자 B씨에게 다수 중첩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으로 기여하여 근로자 B에게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였다.

2. 증명책임의 부담

증명책임 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사건과 같이 반도체 생산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의학적 지식이나 업무 특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은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질병 발생에 대한 증명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산업재해 인정에 따른 권리 추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반도체 생산과 같은 첨단산업은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 사용되면서 업무 또는 영업 비밀을 주장하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6]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문적 지식 및 위험에 대해 근로자가 직접 증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본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다발성 경화증과 작업환경의 관련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원인이라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다발성 경화증 발병은 현재의 과학적 연구 수준에서 단일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의학적 견해에만 기초하여 근로자B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제34조 제6항)에서 파생

된 사회보장수급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장 조사 등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조사·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더욱이 증명책임 분배가 인정되는 이유는 공평한 소송법적 실현에 있으며, 희귀질환과 같이 사인 불명의 경우에는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 실패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근로자 B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해약을 미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였다. A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 종류나 노출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해진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 B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최근에도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실한 역학조사에 기초하여 해당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원고(근로자)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5구단56048 판결).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했으며, 이 때문에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산업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원인 중 하나인 산화에틸렌의 존재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공기 중의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도 전혀 실시되지 않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할 및 사회 복귀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과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을 관리하며,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1조).

았다. 이러한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점은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증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질병 발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회귀질환이 발생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면서 기업과 관계기관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에도 경고를 보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첫째, 보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산업재해와 관련한 다른 재판 및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 데 본 판결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권이라는 개념 하에 헌법상 건강권 및 건강정보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증거 편재 및 의학적 사실 인정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회귀질환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거가 누적됨으로써 근로 환경 및 근로자 질병에 대한 원인주의적 판단보다 완화된 상당인과관계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며[13],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이 점차 제도적으로 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넷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그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이 하급심에서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IV. 결론

지금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직업적 질병은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의 통제와 알 권리의 독점 그리고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전가된 증명책임의 원칙, 산업질환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엄격한 인과성의 적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병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한 것이고, 회귀질환에 대해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적 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회귀질환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더라도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특정 산업 종사자군에서 회귀질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행정청의 조사 거부 내지 지연 등이 있을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에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에 개별 화학물질 노출수준이 적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유해요인들이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회귀질환(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미비점 및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해당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다양한 회귀질환 판례를 수집하고, 보다 광범위한 업무상 질병 사건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산업재해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17.
- [2] 조재호,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사회보장법연구*, 제6권, 제1호, pp.1-57, 2017.
- [3] 김구열, 김재원, 손익찬,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익과 인권*, 제14호, pp.49-133, 2014.
- [4] 반올림, *산업재해 현황*, 2016.
- [5] 오윤식, “업무상 재해 요건과 증명책임,” *저스티스*, 제140호, pp.365-392, 2014.
- [6] 임자운, “침단산업의 유해성과 그 해소 방안,” *노동법연구*, 제39호, pp.51-88, 2015.
- [7] 이달휴, “미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 질병에 대한 업무상 판단,” *법학논고*, 제47호, pp.405-438, 2014.
- [8] R. J. Buchanan and C. Huang, “Informal caregivers assisting people with multiple sclerosis,” *International Journal of MS Care*, Vol.13, pp.177-187, 2011.
- [9] 이인정, “다발성 경화증 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2호, pp.151-191, 2016.
- [10] C. Bowen, A. MacLehose, and J. G. Beaumont, “Advanced multiple sclerosis and psychosocial impact on families,” *Psychology and Health*, Vol.26, No.1, pp.113-127, 2011.
- [11] 황규상, 유근정, 이수영, 이준영, 김두리, 홍가경, 신용진, “자하거 약침 단독치료로 호전된 다발성 경화증 치험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8권, 제2호, pp.289-300, 2017.
- [12] 박지순, 이주원, “산재보험급여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 *고려법학*, 제63호, pp.37-72, 2011.
- [13] 김종영, 김희윤,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경제와 사회*, 제109호, pp.113-152, 2016.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회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 2016년 3월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노인복지